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3-36® Multi-Purpose Lubricant & Corrosion Inhibitor

제품번호 03009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다목적 윤활 방청제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CRC Industries, Inc.

주소 885 Louis Dr.
Warminster Pa 18974
USA

전화번호

일반 정보	215-674-4300
기술 지원	800-521-3168
고객 서비스	800-272-4620

웹사이트 http://www.crcindustries.com/ei/

긴급전화번호 24-HourEmergency (CHEMTREC) 800-424-9300(US)

라. 수입공급자정보

회사명 수도엔터프라이즈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36동 107호

전화번호 032-589-3675

팩스번호 032-589-3677

웹사이트 www.sudokiup.co.kr

이메일 sudo@sudokiup.co.kr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액체	구분 4
건강 유해성	민감성, 피부	구분 1
	흡인 유해성	구분 1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구분 3
OSHA 규정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연소성 액체. 삼키거나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예방 조치 문구

예방 화염이나 뜨거운 표면으로부터 멀리할 것 - 금연. 적합한 환기내에서 사용할 것. 문과 창문을 열고 사용하는 동안 제품이 건조 되도록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것. 라벨에 표시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환기를 증가 시키거나 지역에서 벗어날 것. 미스트/증기 흡입을 피할 것. 작업장 밖에서 오염된 작업복 착용을 금지할 것. 보호장갑/눈보호구/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대응 섭취시 : 즉시 독극물센터/의사에게 연락할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피부접촉시 :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낼 것. 피부자극 또는 발진이 발생하는 경우 : 재사용전에 오염된 작업복을 씻을 것. 화재 시 :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워터젯(water jet) 사용을 금지할 것.

저장 시원함을 유지할 것. 밀봉하여 저장할 것.

폐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다. 분류되지 않는 위험성(HONC)

알려진 바 없음.

라. 추가적인 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혼합물

화학물질명	CAS 번호	(%)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64742-47-8	60 - 70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64742-54-7	5 - 10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64742-70-7	5 - 10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 (Paraffin oils(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64742-71-8	5 - 10
부틸 스테아레이트(Butyl stearate)	123-95-5	1 - 5
디프로필렌 그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Di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88917-22-0	1 - 5
바세린(petrolatum)	8009-03-8	1 - 5

* 특정 화학 물질 및 구성의 비율은 영업비밀로 하고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가.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곳으로 옮길 것.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면 의사를 부를 것.

나. 피부 접촉시 즉시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낼 것. 습진 또는 기타 피부질환의 경우: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지시를 따를 것.

다. 눈 접촉시 물로 씻을 것. 자극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

라. 섭취시 즉시 의사 또는 독극물 센터에 연락할 것. 입을 씻어낼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환자가 토하는 경우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낮출 것.

마. 중요 증상 급성 및 효과지연시 흡입시 폐부종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피부염. 발진.

바. 즉각적인 의료처치 및 특별치료 필요시 일반적인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 부상자 관찰 유지할 것. 증상이 지연될 수 있음.

사.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료인에게 제품 성분을 알려주고, 스스로 보호 조치를 취할 것. 재사용전에 오염된 의복을 씻어 낼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물안개. 내알콜성 거품. 건조 화학 분말. 건조 화학물. 이산화탄소(CO2).

나. 부적절한 소화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니 워터젯(water jet)을 사용하지 말 것.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이 제품은 가연성으로, 가열되면 폭발성 증기/공기혼합물로 형성되어 증기를 생성함. 화재 시, 건강에 해로운 가스가 생길 수 있음.

라.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주의사항 화재시에는 자급식 비상호흡기와 전체보호복을 착용해야 함.

마. 화재 진압 장비 화재시/또는 폭발시에 연기를 마시지 말 것.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물분무로 열에 노출된 용기를 냉각시키거나 용기를 제거할 것.

바. 구체적인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사용하고 기타 관련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사. 일반 화재 위험성 연소성 액체. 화재 시에는, 전소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 시킬 것. 모든 점화원을 제거핚 것(흡연, 섬광, 스파크나 인접지역의 화재 등 금지). 청소 시 적절한 보호 장비와 의류를 착용할 것. 가스 흡입을 피할 것.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적합한 환기를 보장할 것. 누출이 심각해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 기관에 보고할 것. 개인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8항 참조.

나. 정화 또는 제거방법 조치사항 증기나 증기가 구름으로 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물분무를 사용할 것.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금연, 섬광, 스파크 또는 인접지역의 화염). 누출물로부터 가연성 물질(나무,종이,기름 등)을 멀리할 것.
대량 유출 : 위험이 없다면, 물질의 흐름을 멈출 것. 가능하다면, 유출된 물질을 가둘 것. 나중에

폐기하기 위해 물질을 흡수하기 위한 질석, 모래, 흙과 같은 비 연소성 물질을 사용하여 용기에 담아둘 것. 제품을 회수하고, 물로 지역을 씻어낼 것.
소량 유출 : 폐기를 위해 흙,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여 용기에 옮길 것. 흡착물질(천, 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닦을 것.
재사용을 위해 본래의 용기에 유출물을 절대로 담지말 것. 폐기물 처리의 경우 MSDS 제 13항 참조.

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사항 배수로 및 수로 또는 지상으로 배출하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개방된 화염, 뜨거운 표면 그리고 다른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할 것. 사용중에는 금연. 가스흡입을 피할 것. 미스트 또는 증기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그리고 옷과의 접촉을 피할 것. 피부와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을 피할 것.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것.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취급후에는 손을 씻을 것. 환경으로의 유출을 피할 것. 모범적인 산업 위생 관행을 준수할 것. 제품사용 지침은 제품 라벨을 참조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열이나 다른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할 것.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본래의 용기를 밀봉하여 보관.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관 공존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 (MSDS 10항 참조)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다음 성분은 PEL, TLV 또는 기타 권장 노출 한계가있는 제품의 유일한 성분임.
현재 다른 성분에는 알려진 노출 한계가 없음.

U.S. - OSHA

구성성분	종류	값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TWA	5 mg/m3

US.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국) Z-1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29 CFR 1910.1000)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PEL	5 mg/m3	미스트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PEL	5 mg/m3	미스트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PEL	5 mg/m3	미스트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PEL	5 mg/m3	미스트

ACGIH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TWA	5 mg/m3	호흡 가능

US.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Threshold 기준값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부틸 스테아레이트(n-Butyl stearate)(CAS 123-95-5)	TWA	3 mg/m3 10 mg/m3	호흡성 분진 흡입 분율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TWA	5 mg/m3	흡입 분율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TWA	5 mg/m3	흡입 분율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TWA	5 mg/m3	흡입 분율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TWA	5 mg/m3	흡입 분율

U.S. - NIOSH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STEL	10 mg/m3	미스트
	TWA	5 mg/m3	미스트

US. NIOSH(미국직업안전건강연구소) 화학물질 유해성 포켓가이드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STEL	10 mg/m3	미스트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TWA	100 mg/m3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STEL	10 mg/m3	미스트
	TWA	5 mg/m3	미스트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STEL	10 mg/m3	미스트
	TWA	5 mg/m3	미스트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STEL	10 mg/m3	미스트
	TWA	5 mg/m3	미스트

나. 생물학적 노출기준 성분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기준의 언급은 없음.

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일반적으로 시간당 10회 환기가 되는)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라.개인 보호조치 및 장비

눈/얼굴 보호 안전 측면 보호안경 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피부 보호

손 보호 네오프랜, 니트릴 재질의 보호장갑 착용.

기타 보호 적절한 내 화학성 의복을 착용할 것. 불침투성 앞치마를 사용할 것.

호흡기 보호 공학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NIOSH)에서 승인한 카트리지 유기 증기 마스크를 사용 할 것.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시 자급식 호흡장치 사용할 것. 공기 모니터링은 실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함.

열위험 필요시 적절한 열 보호복 착용.

마. 일반적 위생 고려사항 사용 중에는 금연. 항상 제품을 사용한 후에나,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전에 항상 씻는것과 같은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 할 것.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작업복이나 보호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할 것. 작업장 밖에서 오염된 작업복을 입지 말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액체.

형태 액체.

색상 푸른 녹색.

나. 냄새 상쾌함.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93.3℃ (380℉) 추정됨

사. 인화점 88.9℃ (192℉) 태그 밀폐식

아. 증발 속도 느림.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0.5% 추정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5.5% 추정됨

카. 증기압 0.2 hPa 추정됨

타. 증기밀도 > 1 (공기 = 1)

파. 상대밀도 0.83

하. 용해도(물)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220℃ (410℉) 추정됨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운동) 자료없음.
머. 휘발도 78.5% 추정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반응성 제품은 통상의 사용, 저장 및 운송조건에서는 안정하고 비반응성임.
나.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물질은 안정함.
다.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라.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인화점을 초과하는 온도를 피해야 함. 혼합되지 않는 물질과의 접촉
마.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바.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산화물. 유황 산화물. 황화수소. 메르캅탄. 황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시 장기간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피부 접촉시 피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눈 접촉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섭취시 제품의 적은 양이라도 섭취 또는 구토로 인해 폐로 들어갔을 시 심각한 화학적 폐렴이 유발될 수 있음.

나. 증상관련
물리적,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 흡입은 폐부종과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음. 피부 알러지 반응, 피부염, 발진 이 있을 수 있음. 피부염. 발진.

다. 독성 영향 정보
급성 독성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제품	종	시험 결과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급성		
경피		
LD50	쥐	> 2000 mg/kg
경구		
LD50	쥐	> 5 mg/l, 4시간
흡입		
LD50	쥐	> 5000 mg/kg, 2.5시간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급성		
경피		
LD50	토끼	> 2000 mg/kg
경구		
LD50	쥐	> 5 mg/l, 4시간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급성		
경피		
LD50	토끼	> 2000 mg/kg
경구		
LD50	쥐	> 5000 mg/kg

* 제품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성분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음.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장기간 피부 접촉시 일시적인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마. 심한 눈 손상/자극성 눈에 직접 접촉시 일시적인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바. 호흡기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키지 않음

사. 피부 과민성 피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아. 생식세포 변이원성 제품 또는 어떤 성분으로 0.1%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유전독성이나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

자. 발암성 이 제품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IARC 모노그래프. 발암의 전반적 평가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구분3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구분3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미국. 국립 독성 프로그램 (NTP) 발암물질 보고서

등록되지 않음.

미국. OSHA 특별 규정 물질 (29. CFR 1910.1001-1050)

등록되지 않음.

차. 생식독성 이 제품은 생식이나 발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카.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타.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파. 흡인 유해성 삼키거나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하. 만성 효과 지속적인 흡입은 해로울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이 제품은 환경적 유해물질로 구분되지 않음. 그러나, 많은 양 또느 잦는 유출이 환경에 해롭거나 손상을 입힐 가능성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제품	종		시험결과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수생			
급성			
갑각류	EC50	물벼룩(Daphnia magna)	> 10000 mg/l, 48시간
어류	LC50	잉어과 물고기(Pimephales promelas)	> 100 mg/l, 96시간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수생			
어류	LC50	무지개송어, 도날드슨송어 (Oncorhynchus mykiss)	2.9 mg/l, 96시간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수생			
급성			
갑각류	EC50	물벼룩(Daphnia)	> 100 mg/l, 48시간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이 혼합물내 성분의 분해성에 관한 자료는 없음.

다.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라.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의 처분 잔류 / 미사용제품 이 제품은 RCRA 유해성 폐기물이 아님. (See 40 CFR Part 261.20 - 261.33참조). 빈 용기는 재활용 할 수 있음. 수집 및 회수 또는 허가 받은 밀봉 용기에 폐기. 물질이 하수구/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물질이나 다쓴 용기가 연못, 수로 또는 도랑에 유입하여 오염시키지 말 것.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 할 것.

나. 유해 폐기물 코드 규제 되지 않음.

다. 오염된 용기 빈 용기에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빈 후라도 라벨 경고문에 따라 처리. 빈 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 되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DOT

위험물질로 규제되지 않음.

나. IATA

위험물질로 규제되지 않음.

다. IMDG

위험물질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미국 연방 정부 규정 OSHA 위험요소, 29 CFR 1910. 1200.의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은 '유해 화학 물질'이다.

TSCA Section 12(b) Export Notification (40 CFR 707, Subpt. D)

규제되지 않음

SARA 304 Emergency release notification

규제되지 않음

US. OSHA Specially Regulated Substances (29 CFR 1910.1001-1050)

등록되지 않음

CERCLA Hazardous Substance List (40 CFR 302.4)

등록되지 않음

CERCLA Hazardous Substances : Reportable quantity

등록되지 않음

유출되거나 성분의 손실이 발생 될 시 국가대응센터 또는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함.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List

규제되지않음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r)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40 CFR 68.130)

규제되지 않음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규제되지 않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제되지 않음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SARA)

Classified hazard categories

인화성(가스, 에어로졸, 액체 또는 고체)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흡인 유해성

SARA 302 Extremly hazardous substance

등록되지 않음.

SARA 311/312 Hazardous chemical

있음.

SARA 313 (TRI reporting)

규제되지 않음.

나. 미국 주 정부 규정

US. New Jersey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등록되지않음.

US. Massachusetts RTK - Substance List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US. Pennsylvania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Law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US. Rhode Island RTK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US. California Proposition 65

California 음용수와 독성 강화 법령 1986 (Proposition 65) :
이 제품은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성물질로 현재 분류되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음.

US. California. Candidate Chemicals List. Safer Consumer Products Regulations (Cal. Code Regs, tit. 22, 69502.3, subd.(a))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중질 파라핀(CAS 64742-54-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증류액(석유), 수소로 처리된 경질(CAS 64742-47-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중질(CAS 64742-70-7)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파라핀 오일(석유), 촉매 탈랍 경질(CAS 64742-71-8)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light)
바세린(Petrolatum)(CAS 8009-03-8)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규정

EPA

VOC content (40 CFR 51.100(s))	100%
Consumer products(40 CFR 59, Subpt. C)	규제되지 않음.

State

Consumer products	이 제품은 다목적 윤활제로 50개 주에서 호환 사용된다.
VOC content (CA)	0%
VOC content (OTC)	0%

라. International Inventories

Country(s) or region	Inventory name	Inventory (yes/no)
Australia	Aust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예
Canada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예
Canada	non-Domestic Substances List (NDSL)	아니오
China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	예
Europe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EINECS)	아니오
Europe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ELINCS)	아니오
Japan	Inventory of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아니오
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ECL)	예
New Zealand	New Zealand Inventory	아니오
Philippines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아니오
Taiwan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CSI)	예
United State & Puerto Rico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Inventory	예

"예" 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요구목록에 부합되며,
"아니오" 는, 본 제품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목록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작성일자	2020년 03월 28일
나. 작성자	Allison Yoon
다. 버전#	01
라. 추가정보	CRC # 510F
마. 부가설명	이 문서에 포함 된 정보는 제공된 특정 물질에 적용됩니다. 이 물질이 다른 물질과 혼합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CRC가 알고 있는 최상의 정보이거나 CRC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얻은 최선의 정보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라벨에 모든 경고와 지침을 읽고, 정보의 자세한 설명은 MSDS에 포함되어 있으며 감독자 또는 안전 보건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